

##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의 권고적 해석

### “개체교회 해산에 관하여”

노회가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책임 중 하나는 교회의 해산입니다. 아래는 이에 관한 주요 문제와 책임을 정리한 개요입니다.

- I. 일반적으로 노회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전권위원회(AC)를 구성해야 합니다. 많은 법적 절차와 결과가 노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므로,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룹이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.
  - a. 해산되는 교회의 장로를 AC 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익합니다. 이는 과정 전반에 걸쳐 남은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. 또한, 관련된 노회의 목회자가 있다면 그 역시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 
- II. 이러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신중하고 구체적인 노회의 결의안이 "성공적인" 해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.
  - a. 이러한 결의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    - i. (노회이름)\_\_\_\_ 노회는 \_(교회이름)\_\_\_\_ 장로교회의 해소를 \_(날짜)\_\_\_\_ 부터 효력 발생으로 승인한다.
    - ii. AC 는 목사 및/또는 당회와 협력하여 남아 있는 교인들의 이전을 지원하고, 예배 계획과 교회의 사역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합니다. 만약 당회가 없는 경우, AC 가 교회 해산 시까지 당회의 권한을 대신 맡게 된다.

- iii. AC 는 당회 기록(모든 기록 포함)을 인수하고, 업무를 마무리한 후 이를 보관하여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. 서기는 이후 해당 기록을 역사부에 전달한다.
- iv. AC 는 여전히 교적에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이임장(letter of dismissal)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v. **낭독: 규례서 제 4 장에 따르면, 장로교회의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회에 신탁되어 있다. (노회 이름) 노회의 AC 는 \_\_\_(날짜)\_\_\_ 에 임명되어 교회의 모든 부동산, 동산, 재무 기록, 장비 목록, (기타 자산 및 교회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나열) 등을 수취할 권한을 부여받으며, 모든 계좌의 소유권을 노회로 이전하도록 조치한다.**

\* 규례서의 많은 부분을 낭독하는 이유는 해산된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미국장로교 헌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고,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.

- vi. AC(및/또는 노회가 보유한 경우 이사회를)에게 현재 알려지지 않은 (교회 이름) 장로교회의 재산이나 향후 유언 또는 신탁의 수혜자로서 (교회 이름) 장로교회에 귀속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노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.

**III. 행정전권위원회(AC)가 구성되면, 먼저 목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**

- a. 일반적으로, 당회가 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일상적인 책임을 계속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 - i. AC 는 당회가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- ii.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, AC 는 특정 개인 재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호합니다.
  - iii. AC 는 목사가 없을 경우,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당회가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장례식, 결혼식, 세례, 병문안, 상담 등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
  - iv. AC 는 당회가 교인들을 다른 지역 교회로 이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. (가능한 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당회가 해산되기 전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)
  - v. AC 는 상황에 따라 당회가 교회 해산 예배를 계획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.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예배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책임은 당회에 있으며, AC 는 이 과정에서 당회를 지원하고 노회의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AC 는 남아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와 노회 전체가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.
- b. 위의 모든 단계에서 AC 는 당회와 협력하여 요청이나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.

**IV. 목회적 문제가 처리되면, AC 는 해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.**

- a. AC 는 해산일에 새로운 교회를 찾지 못한 교인들의 최종 명단을 보관합니다. 경우에 따라, 노회 서기가 이 명단을 보관할 수 있으며, 만약 위원회가 해산될 때 여전히 교인들이 명단에 남아 있다면 노회 서기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b. 부동산 처리에 관한 결정
  - i. 만약 여전히 교회의 공식적인 신탁인(이사회원)이 있다면, 신탁인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든 재산을 공식적으로 노회로 이전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 유익합니다. 신탁인이 없다면, 위원회는 재산에 대한

노회의 권리를 교단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알리고, 재산이 노회에 의해 판매되거나 활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- ii. 이러한 거래를 돕기 위해 해당 주에서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교단 법 및 주 재산 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.
- c. AC 는 당회에서 분배하지 않은 교회의 모든 개인 재산(은행 계좌, 주식, 신탁 등)이 노회의 이름으로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.
  - i. AC 는 교회가 해산될 경우 일부 자산(대개 신탁)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만약 교회가 이러한 자산(보통 유언에서 발생한 신탁 자산)을 보유하고 있다면, AC 는 교회의 법인 지위를 노회로 이전하고, 노회 임원(일반적으로 이사회)을 법인 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때때로 교회가 주(state)에서 인가받은 선교 활동(예: 학교)을 보유하고 있다면, 해당 선교 활동의 라이선스를 지속되는 선교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는 라이선스를 다시 승인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d. AC 는 노회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e. AC 는 노회의 보험 정책이 해산 중인 교회의 자산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, 교회의 보험 정책이 노회의 보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f. 재산의 최종 처분 후 법인 해산이 이루어집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주 국무장관 또는 해당 주의 유사한 공식에게 해산 정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(교회가 위치한 주에서 비영리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를 확인하려면 현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.)

**V. AC 는 해산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.**

- a. AC 는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, 중요한 순간들을 강조하며 그 사역에 감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.
- b. 그 다음으로 보고서는 AC 가 진행한 과정과 취한 조치들을 설명해야 합니다. (여기에는 노회를 교회의 "권리 승계자"로 만드는 조치가 포함됩니다.)
- c.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교인들의 이전에 대한 전체 기록과 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. (그리고 이후 서기가 명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단에 남아 있는 교인들을 기재하며) 또한,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.

**VI. 자산 사용의 대한 통제**

당회는 일반적으로 예산과 자선 기금의 지출에 대한 완전한 통제 권한을 가집니다.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해산하는 과정에 있을 때, 자산과 자선 기금의 분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노회의 권한입니다.

미국장로교 총회 유권해석:

GAPJC(2006, 217-12, Chesterbrook Taiwanese PC v. National Capital Pby):

- 1) 특정 교회가 보유하거나 교회를 위해 보유한 모든 재산은 PC(USA)를 위한 신탁으로 보유된다는 원칙은 교회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교회와 노회에 적용된다.
- 2) 노회는 교회 재산이 특정 교회를 위해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, 그 사용 및 처분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.
- 3) 해산하는 교회는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만 교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.

*\*이 문서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저희 사무실([502-569-5083]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